



2012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기준^(개정)

※ 이 기준은 산림청에서 보급하는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기준으로 모든 해석의 권한은 산림청에 있으며 해당 법령 등에 대한 기준은 별도의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2012. 5. 14.

산 립 청

2012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기준

이 기준은 저탄소녹색성장과 화석연료대체를 통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하여 산림청에서 보급하는 산업용 목재펠릿에 대하여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자 신뢰 향상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적용한다.

1 | 보급대상 보일러

-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제조업체 등록 및 취소기준”(산림청, '12.02.20)에 따라 산림청에 등록된 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는 열설비로 열효율 85%이상의 제품에 한한다.
 - (스팀보일러) 증발량 1톤/h 이상의 포화증기보일러
 - (스팀보일러용 연소기) 증발량 1톤/h 이상의 포화증기보일러용 연소기
 - (열풍기 및 대형 온수보일러) 60만kcal/h이상의 열풍기 및 대형 온수보일러

2 | 보조금 지급대상 및 유형

- 보조금 지급대상은 보일러(본체 및 연통) 및 목재펠릿 저장시설 등 부대시설과 이에 따른 설치비에 한한다.
 - * 설치비는 보일러와 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 * 저장시설 등 부대시설은 사일로, 펠릿이송장치 등으로 건물과 불필요한 시설은 제외
- 지원유형
 - * 반드시 목재펠릿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예비용 보일러를 갖추고 있을 것
 - (신규) 보급대상 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 (교체) 기존 보일러를 철거하고 보급대상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 (대체) 기존 보일러를 철거하지 않고 보급대상 보일러를 설치하고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지원 수량 및 금액의 제한

□ (지원 수량) 원칙적으로 업체당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1대의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용량 합계 10톤/h 범위에서 2대까지 지원가능

○ 2대 지원액은 총 규모에 대한 지원한도액 범위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액은 실제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설치대상 보일러의 가격을 평가하여 평가금액의 50% 지원(국고 50%, 자부담 50%)

* 기준단가는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한도액은 다음과 같으며, 지원한도액 초과 금액은 자부담

(단위:억원)

| 구분 | 스팀2톤까지 | 2톤초과 | 지원한도 |
|------------|--------------|------------|------------|
| 스팀보일러 | 톤당 1.5 | 톤당 1억원 추가 | 최대 7톤, 8억원 |
| 스팀보일러용 연소기 | 톤당 5천만원 | 톤당 2천만원 추가 | 최대 7톤, 2억원 |
| 열풍기 | kcal/h당 125원 | | 최대 1.5억원 |
| 대형 온수보일러 | kcal/h당 200원 | | 최대 3억원 |

* 스팀보일러 최대금액 : 7톤=(2톤*1.5억)+(5톤*1억/톤)=3+5=8억원

* 스팀보일러용 연소기 최대금액 : 7톤=(2톤*0.5억)+(5톤*0.2억/톤)=1+1=2억원

* 열풍기 : 1,200,000kcal/h*125원=1.5억원

* 온수보일러 1,500,000kcal/h*200원=3.0억원

4

최종 지원가격 결정

- 보일러 제조회사는 시공업체로 선정된 경우 공인된 원가계산용역 기관이 작성한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원가계산은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 2200.04-160-9, 2011.05.13.)에 의한 “제조원가계산 방식”을 적용하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설치비 포함)
 - * 보일러의 제조와 설치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설치는 공사원가계산방식에 따름(신설)
 -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별히 낮거나 높은 단가를 책정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
- 산림청은 외부 전문기관에 업체별 보일러 원가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의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가격을 결정한다.
 - ① 산림청 용역 결과가 제조사에서 제시한 가격보다 높으면 제조사에서 제시한 가격을 보급기준가격으로 결정
 - ② 산림청 용역결과가 제조사에서 제시한 가격보다 낮으면 산림청 용역가격이하로 협의 결정(개정)
 - * 산림청 용역결과에 비용의 누락 및 오류가 있는 경우 10일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타당한 경우 재 용역 후 협의 결정 가능(신설)
 - ③ 가격을 담합하여 제시하거나 가격을 부풀려 제시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신설)

【 원가계산용역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 2200.04-160-9,2011.05.13.)」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5

지원받는 업체 자격 및 의무

- (지원 대상자) 보급대상 보일러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 업체 중 연간 펠릿 소비량 등을 종합 심사하여 결정

□ 지원 조건

- 신청일 현재 설치장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 착수 전까지 보일러 설치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것
- 목재펠릿 보일러 가동에 따른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설치전과 설치후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설치전 : 최근 1년간 설치대상 보일러의 가동실적

| 보일러 종류 | 용량 | 설치년도 | 사용연료 | 평균단가 | 연간사용량 | 소요금액 |
|--------|----|------|------|------|-------|------|
| | | | | | | |

- 설치후 : 향후 3년간 가동실적(분기별 현황)

| 보일러 종류 | 용량 | 설치년도 | 목재펠릿 사용량 | | | 소요금액 | | | ton당 단가 |
|--------|----|------|----------|-----------------|---------------|------|-----------------|---------------|---------|
| | | | 계 | 전분기 (/4 까지) | 금 분기 (/4) | 계 | 전분기 (/4 까지) | 금 분기 (/4) | |
| | | | | | | | | | |

-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관하여 펠릿보일러 잠재 수요자 등의 견학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할 수 있을 것
- 목재펠릿 제조·유통업체에서 장기·안정적으로 목재펠릿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여 제출할 것
- 반드시 목재펠릿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예비용 보일러를 갖추고 있어서 펠릿보일러 고장 등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을 것
- 설치한 보일러는 7년간 지방산림청의 허가 없이 폐기·양도 등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 보일러의 고장, 공장의 처분·폐업 등으로 폐기·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지원을 받아 설치한 업체는 선량한 책임을 다하여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업체의 고의·과실 등으로 정상적인 유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지원받는 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 ① 지원대상 선정(산림청) →
- ② 시공업체 선정(지원받은 업체) →
- ③ 보일러 설치사업 승인 신청(지원받은 업체 → 지방산림청) →
- ④ 서류검토, 현지조사 및 가격심사요청(지방산림청) →
- ⑤ 가격적정성 심사(산림청) →
- ⑥ 보일러 설치에 관한 사항 협의(지방산림청, 지원받은 업체) →
- ⑦ 보일러 설치사업 승인(지방산림청 → 지원받은 업체) →
- ⑧ 사업실행(지원받은 업체, 보일러 시공업체) →
- ⑨ 준공검사(지방산림청, 지원받은 업체 공동) →
- ⑩ 보조금 청구 및 지급(지방산림청, 지원받은 업체)

□ 단계별 절차

① 지원대상 업체 선정(산림청)

- (신청서 접수) 지원을 받고자하는 업체는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일자까지 산림청으로 제출
 - * 당일까지 도착분에 한하되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당일자로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는 인정
 - * 접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화 등으로 접수확인 요망
- (지원대상 업체 선정) 산림청 설치한 “산업용목재펠릿보일러 지원받은 업체 선정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정
 - *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가 적합한 업종 여부, 설치공간, 연간 펠릿 소비예상량, 지역별 안배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
 - * 필요시 브리핑을 요청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음
- 지원대상 업체가 확정되면 해당지역 지방산림청으로 통보

② 시공업체 선정(지원받은 업체)

-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제조능력 및 준공검사 기준」에 따라 산림청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지원받은 업체가 선정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기준】

- * 계약예규(2012.1.1. 기획재정부) 준용하며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참고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절차)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실시
- (협상내용)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되 협상을 통해 그 내용 일부는 조정 가능
- (평가기준) 시공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과 같음
 - ① 기술능력 평가 80점
 -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등을 평가하되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 ② 입찰가격 평가 2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 내부위원은 2인 이내로 제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정
 - 위원의 자격
 - ① 당해 심사분야에 해당하는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 ② 당해 심사분야 관련 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전문지식·경험이 풍부한 자
 - ③ 당해 심사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해당분야 박사 및 기술자 자격 소지자
 - ④ 당해 심사분야 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자로서 책임연구원 이상인자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관련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
 - ⑥ 기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지원받은 업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받은 업체와 시공업체간 계약서 작성 및 설계착수
- 설계가 완료되면 에너지관리공단에 설계심사 요청
- 에너지 관리공단으로부터 설계승인

③ 보일러 설치사업 승인 신청(지원받은 업체 → 지방산림청)

-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설치보일러에 대한 설계서가 승인이 되면 지원업체에서는 보일러 설치사업 승인 신청
- 이 때 보일러 설치장소, 설치업체, 보일러 규모, 가격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설계서 승인이 된 것을 증빙하는 서류
 - 보일러 지원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계산서
 - * 원가계산서는 “3. 보일러 지원가격 결정”에 부합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산림청 및 산림청에서 위탁한 기관에서 원가계산 용역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서류검토, 현지조사 및 가격심사요청(지방산림청)

- 지원대상 업체에서 보일러 설치사업 승인신청이 요청이 오면 지방산림청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사
 - 지원받은 업체가 산림청에서 결정한 업체가 맞는지 여부
 - 설치장소가 승인된 내용과 맞는지, 실제 설치가 가능한 업체인지 등 현지 확인 병행
 - 보일러 설치 업체가 산림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
 - 보일러 설계서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승인되었는지 여부
 - 보일러 용량이 승인된 내용과 맞는지 여부 등 확인 병행
- 산림청에 적정가격 심사요청
 - 지원받은 업체에서 제출한 보일러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적정가격 심사 요청

⑤ 가격적정성 심사(산림청)

- 지방산림청에서 가격심사요청이 오면 산림청에서는 외부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하여 가격심사
- 가격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지원가격을 결정하여 지방산림청에 통보

⑥ 보일러 설치에 관한 사항 협의(지방산림청, 지원받은 업체)

- 지방산림청에서는 설치대상지 현지조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산림청의 가격결정 내용을 지원받은 업체에 통보
- 지원받은 업체에서 해당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협의
 - 가격 조건에 대해서는 산림청에 재심의 요청 가능

⑦ 보일러 설치사업 승인(지방산림청 → 지원받은 업체)

- 서류검토, 현지조사 결과 및 가격 등 제반 조건에 대해 협의가 완료되면 지방산림청에서는 보일러 설치사업 승인

⑧ 사업실행(지원받은 업체, 보일러 시공업체)

- (설치) 지원대상 업체의 관리 하에 보일러 설치작업 실행
 - 보일러 설치는 제조사에서 직접 하여야 함
- (설치심사) 시공업체 및 지원대상 업체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단계별 설치심사를 받아 설치
- (시운전 및 데이터 측정) 보일러 설치업체에서 시운전을 실행하며, 준공검사 기준에 따른 각종 데이터를 측정
 - 준공검사 신청시 측정한 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함

⑨ 준공검사

- 산림청이 구성한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기술위원회” 위원 2명이상,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준공검사관, 지원대상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등 4인 이상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신설)
- 이외는 “7. 준공검사 기준”에 따름

⑩ 자부담 집행(지원업체)

- “8. 자부담 및 국고보조금 집행 기준 ”에 따름

⑪ 보조금 청구 및 지급(지방산림청, 지원받은 업체)

- “9. 설치완료 및 대금 청구 기준”에 따름

7**지원대상 업체의 선정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신설)**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 업체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 지정한 기한내에 보일러 설치사업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자부담금(총액의 50%)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 해당 지방산림청의 승인 없이 7년 이내에 보일러를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8**표준계약서의 사용(신설)**

- 목재펠릿보일러 제조사와 지원대상자는 <붙임3>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 계약서의 임의변경은 불가능하나 계약 조건은 필요에 따라 추가 가능

9**제조사의 계좌등록(신설)**

- (계좌등록제 운영) 목재펠릿보일러 제조사는 보조금 및 자부담금을 수령하기 위해 산림청에 입금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 1회사 1계좌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3개까지 가능
 - 계좌의 명의는 제조사 또는 대표자만 가능

10**준공검사 기준**

- 다음 사항을 전부를 충족하여야 준공검사가 가능하다.
 - 보일러 목표수준, 보일러의 기본요건, 장시간 안정성 보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성능검사를 필해야 함
 - 보일러의 용량 및 스팀 발생량, 열효율, 배기가스 농도, 스팀의 건도 등은 공인성적서를 제출해야 함(신설)
 - 보일러 심사서류로 제출한 「목재펠릿 보일러 구조 및 성능 설명서」의 내용과 같거나 이상일 것
 - 자문·심의 등의 위원회, 공사감독자 또는 보일러를 지원받은 업체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실적을 제출할 것
- ※ 성능의 동등, 우수여부는 객관적 자료 또는 전문가의 자문에 의하여 평가

11**자부담 및 국고보조금 집행 기준**

-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자부담이 집행 완료된 후 국고보조금을 집행한다.
- 자부담금 집행
 - 자부담금은 계약금과 준공금으로 펠릿보일러 제조사가 산림청에 등록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 계약금은 자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후 14일 이내에 지급
 - 준공금은 자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치 완료 후 계약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 “설치 완료 후”란 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 및 데이터 측정이 완료되어 지방산림청에 준공검사를 요청하기 전까지를 말하며 계약 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로 함
 - 자부담은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입금 계좌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표 등 증빙자료를 제출(현금 직접지급은 불가)

□ 국고보조금 집행

- 자부담 집행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 요청을 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은 준공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
- (보조금 청구) 지원대상 자부담금 집행 후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에 보조금 지급을 청구
 - 지원대상 업체와 설치업체가 합의한 경우 설치업체가 보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 지방산림청은 자부담 집행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

12 | 설치완료 및 대금 청구

□ 설치가 완료되면 준공검사 기준에 따라 지방산림청과 보일러를 지원받은 업체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에 대금을 청구한다.

- 청구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준공 설계도서, 목재펠릿보일러 매매계약서(사본)
- 설치완료 및 장기안정성 검사 확인서, 자부담 증빙서류(입금계좌 사본, 무통장 입금표), 사진첩
- 하자보수이행증권(사본), 제조물배상책임보험증권(사본)
- 품질보증서(사본), 사후관리방안, 기타 지방산림청장이 요청하는 서류
- 소비자 교육 증빙서
 - * 입금계좌 사본 및 무통장입금표는 계약금액(자부담 30%)이 매수자 명의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제출서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 추가 또는 제외 가능하나 자부담 수취증빙서와 소비자 교육 증빙서는 반드시 징구
 - *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위에 준하는 증빙서를 소비자로부터 징구하여야 함

- 지원받을 업체는 다음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정보는 일반에 공개 할 수 있다.
-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 신청서 1부(붙임1)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 서약서 1부(붙임2)
 - 목재펠릿 제조·유통업체와 장기·안정적으로 목재펠릿을 공급할 것을 약속하는 MOU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기타 업체현황, 펠릿소비예상량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
 - 심의 서류로 제출한 것 중 공개가 불가능한 사항은 사전에 공개 금지 요청

< 붙임 2 >

서 약 서

- 업 체 명 :
- 사업종목 :
- 대 표 자 :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에 지원요청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산업용 보일러 지원과 관련하여 귀 청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는 초기단계로써 기술이 개발 중에 있어 불완전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음
2.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는 언제든지 고장이 날 수 있고, 사용상 불편함이 있음을 이해하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대비하고 있음
3.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인허가 등 행정절차는 신청자가 처리하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4. 목재펠릿 보일러 가동에 따른 성과분석, 견학 등을 위해 산림청에서 요청하면 최대한 협조하겠음

위와 같이 서약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자)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산림청장 귀하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매매계약서

| | | | | | |
|----------------------|--------------|---|--------------------|--------------------|--------------------|
| 계 약 당사자 | 매수인 | (주) 000 (인) | 대표자 | 성명 | |
| | | | 주소 | 사업자 등록번호 | |
| | | | 연락처 | TEL | |
| | | | | H·P | |
| | 매도인 | (주) 000 (인) | 대표자 | 성명 | |
| | | | 주소 | 사업자 등록번호 | |
| | | | 연락처 | TEL | |
| | | | | H·P | |
| | | | A/S | | |
| 계 약 내 용 | 모델명 | | | 수량 | |
| | 매각금액 | 총액 | 자부담금 * 총액의 50% | | 국고보조금 * 총액의 50% |
| | | | 계약금 * 자부담금의 50% | 준공금 * 자부담금의 50% | |
| | 설치장소 (주소) | | | | |
| | 설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계약 조건 | 일반 | * 뒷면의 계약조항과 같음 | | |
| 특수 | | | | | |
| 입금 계좌 (산림청 등록 계좌) | | | | | |
| 첨부서류 | |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년, 요율 3%)” ②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③ 보일러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3년) ④ 보일러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⑤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⑥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 ⑦ 소비자안내문 및 펠릿 구매처 정보 ⑧ 계약금(자부담) 무통장 입금표 및 입금 계좌 사본 | | | |

* 뒷면의 계약 일반조건을 확인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를 받아야 하며 매수인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인수받아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4조(사후관리 및 A/S) ① 매도인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에 따라 무상A/S와 유상A/S를 구분하여 성실히 A/S를 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은 품질보증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는 품질이 유지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 매도인과 매수인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환수) ① 매수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없이 7년이내에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매수인이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고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②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고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매수인은 자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약속하며 자부담 미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함(서명)

* 매도인은 자부담금을 납부받을 것을 약속하며 자부담 미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함(서명)

제7조(사용자 교육) ① 매도자는 매수인이 해당 보일러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보일러의 운용과 사후관리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받았으므로 보일러 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음(서명)